



성동구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시 수시분 결정결의서 (2016년 3월분)

1. 2016년 3월 지방소득세 (종업원분시) 수시 과세분에 대한 징수결정결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.

가. 납세의무자: 케이씨에이손해사정 외 8명

나. 세입과목: (쟁지방세수입 (관지방세수입 (항지방세, (목지방소득세 종업원분시

다. 결정세액: 금 15,166,270원(금 일천오백일십육만육천이백칠십 원)

(단위: 건, 원)

결정내용	건 수	본 세	가 산 금	합 계
지방소득세 종업원분시	9	15,166,270	0	15,166,270

- 붙임 1. 수시분 징수결정결의서 1부.
2. 수시분 과세내역서 1부. 끝

지방세무주사 **박혜영** 지방소득세2팀장 **안미미** 세무2과장 **代이윤구** 기획재정국장 **03/31 박기웅**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6209 () 접수 ()

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/ http://www.sd.go.kr
 전화 02-2286-5333 /전송 02-2286-5920 / victoria@sd.go.kr / 부분공개